

문서번호	국제교류담당관-5570	시 민			
결재일자	2020.5.22.	주무관	국제정책팀장	국제교류담당관	국제협력관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이현음	홍승기	전재명	05/22 배현숙
방침번호					



2020년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

2020. 5

기 획 조 정 실
(국제교류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 형 성	<p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p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</p> <p>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<p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p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</p> <p>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집행	<p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p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홍보	<p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기타사항	<p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2020년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

市 소재 민간단체의 민간외교활동 역량강화와 개발도상국 도시의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

I 추진개요

추진근거

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(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)
-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(협력체계 구축)
 -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·외 기관·단체·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-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(2017.3)

추진방향

- 개발도상국 빈곤도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통해 해외도시와의 우호 관계구축 및 우리시 국제적 이미지 제고
- 市 소재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, 민간단체의 국제역량을 높이고,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네트워크 강화
- 작년도 최초 실시한 「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」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전년도 사업대상지역(아시아) 조건 계속 유지 및 사업분야로 금년도 글로벌 이슈(코로나19 팬데믹)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‘보건’ 추가

※ 사업분야 : ('19) 교육, 아동(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) ⇒ ('20) 교육, 보건(코로나19 팬데믹)

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

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개발협력사업* 중 공공성과 효과성 높은 사업에 대해 대외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추진

*개발협력사업 :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, 취약계층(여성·아동·장애인 등)의 인권향상, 환경문제 해결 등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·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

□ 공모사업 개요

- 공모기간 : 2020.5.22(금) ~ 6.4(목), 14일간 (접수: 6.2(화)~6.4(목))
- 공모분야 :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 내 **‘교육, 보건’** 공적개발원조 자유제안
 - 분야별 4개 단체(사업)/총 8개 단체(사업) 선정 ※각 분야 중복지원 불가, 선정단체수 조정 가능
 -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 및 부정적 고정관념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선정

분야 (단체수)	사업내용 (예시)
교육 (4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사회 초등학교 학습시설 개선, 교재개발 및 교수법 연수 • 취약계층대상 기자재 및 교보재 지원 등을 통한 학습기회 보장
보건 (4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빈곤지역/재해지역 아동에게 영양제 및 기초생필품 지원사업 • 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위생/보건키트 지원사업

※ 외교부 고시 흑색경보(여행금지) 및 적색(철수권고)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,
코로나19로부터 사업참가자 등의 안전이 우선 확보된 사업추진 방안 소명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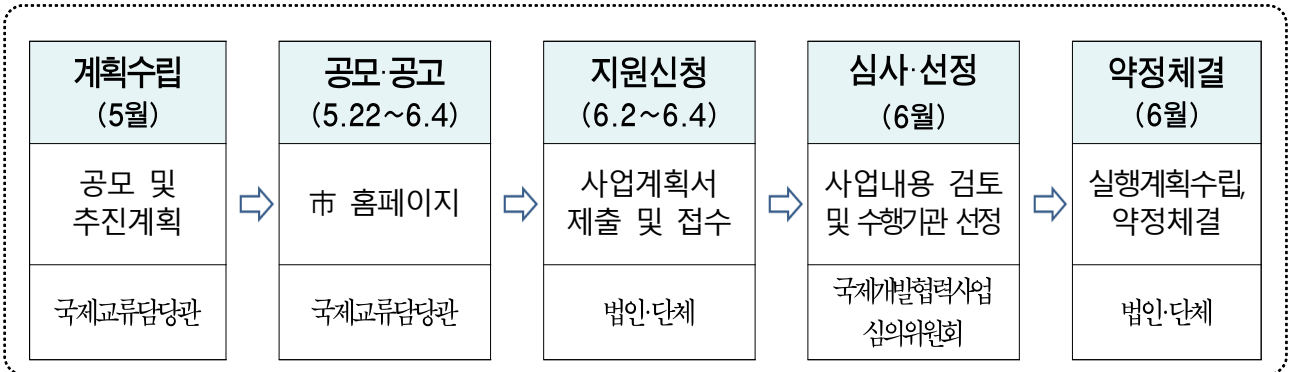
- 추진방법 :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공모·선정 후 신청금액(보조금) 지원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'20.12월
- 신청자격 :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·비영리 민간단체
 -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,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
 - ▶ 공고일 현재 허가,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
 - 최근 2년 이상 해외 국제개발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
 - 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, 해외에서 국제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

<제외법인(단체)>

- ✓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
- ✓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/ 유사단체(인적·물적 구성의 유사)의 이중 신청
- ✓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·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등
- ✓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
- 예산금액 : 총195백만원(민간경상사업보조)
 - 각 단체(사업)별 보조금 20백만원~29백만원
 - 심사과정 중 단체가 신청한 지원금에서 보조액수 조정 가능

II 추진단계별 세부계획



1. 공모·공고 및 지원신청

- 공모기간 : '20. 5.22.(금) ~ 6. 4.(목), 14일간
- 공고방법 :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게재
- 공고내용
 - 신청대상 단체, 신청 사업분야, 제출서류, 신청기간
 - 심사·선정, 보조금 교부방법,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
- 제출서류
 - 지원사업 신청서, 지원사업 추진계획서(요약서포함)
 - 법인(단체)소개서, 법인(단체)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
 - 법인(단체)의 정관, 법인허가증(단체등록증) 사본
- 접수기간 : '20. 6. 2.(화) ~ 6. 4.(목) 오전9시~오후6시
- 접수처 :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(신청사 8층)
- 접수방법 : 우편(소인날자 기준) 또는 E-mail(leeonseoul@seoul.go.kr)

〈사업계획서 포함사항〉

- 사업목적,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법
-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, 기대효과, 사업비 집행계획
- **코로나 19관련 사업 참여자 등의 안전확보 방안 및 사업수행 방법**

2. 심사·선정

- 심사시기 : '20. 6월 중
- 심사주관 :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
- 심사방법 (3단계)

단 계 별	요건심사(1단계)	내용심사(2단계)	최종심사(3단계)
심사방법	주관부서	위원회	주관부서
심사내용	지원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	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지원단체, 지원액 최종 결정	실질적 사업수행능력 확인
비 고	※ 국제교류담당관	내외부 전문가 5~7명 (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)	필요시 현장점검 가능

- **요건심사** :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심사 (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)
 - ▶ 공모 제외단체 및 제외사업 해당 여부, 사업의 적격성 및 단체의 관련성 등
- **내용심사** : 정성적 평가 통한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
 - ▶ 사업수행의 적격성,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
 - ▶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
- ※ **코로나 19 위험성 등으로 현지 사업이 어렵거나, 참여자 안전계획이 미흡한 사업은 탈락**
- **최종심사** : 선정 법인·단체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확인
 - ▶ 현장점검 결과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의 경우 선정 취소,
차순위 법인·단체 추가 선정

〈심사 제외 사업〉

-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
-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
- 일회성,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(소모성 캠페인,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)
-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
- 재산증식 위주 사업, 자산구입 위주 사업, 장학금 위주 사업 (단순 재정집행)
- 인건비,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
-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

○ 선정기준
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
사업계획 (60점)	지원대상의 적정성 (사업지역 및 분야의 적절성)	10점
	사업계획의 명확성 (사업일정의 타당성, 실현가능성)	20점
	코로나 19로부터 안전확보 준비성 (사업참가자 안전확보 방안/감염병 전파 예방방안)	20점
	현지수요 적합성 (수혜국 및 현지여건을 반영한 계획인지 여부)	10점
예산효율 (20점)	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	10점
	자체 부담 정도(재정적, 물질적)	10점
기관평가 (20점)	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전담인력 확보	5점
	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여부 (현지직원 상주여부, 해외도시와 파트너십 구축 등)	10점
	해외 국제개발 지원사업 수행실적	5점

○ 결과공표 :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

3. 실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

○ 선정단체 교육

- 민관협력 국제개발협력사업 소개
- 예산집행 원칙, 보조금 집행 및 정산(서울시보조금 관리시스템) 교육 등

○ 실행계획 수립
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체는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, 방법, 예산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 수립

○ 협약체결

- 사업신청서와 비교 검토하여 실행계획서 승인 후 약정체결
- 이행보증보험 가입(자부담),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

4. 사업진행 및 관리

- 보조금 교부
 - 보조금은 2회 분할교부(1차 70%, 2차 30%) 원칙으로 하되,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
 -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
-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('20.11월 중)
 -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
 -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등 병행
- 회계관리
 -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체크카드로 관리
 -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(자부담처리)
 -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(예외적 계좌입금) 원칙

구분	사용대상	세부내용
카드사용	모든 사업비 집행 소모성 경비	물품구입비, 식대, 교통비, 숙박비 등
계좌이체	예외적 사용 ex. 인건비성 경비	강사료, 회의참석비, 원고료, 단순인건비 등
기타지출	카드·계좌이체 곤란한 지출 ※ 원칙적 금지	세금계산서,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체

※ 해외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, 사업종료 후 증빙사진·영수증 첨부하여 정산

5. 사업평가 및 정산

- 정산시기 :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(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시 이에 따름)
 -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→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
 - 기준 : 지방재정법,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집행지침 등
 - 내용 : 사업추진실적, 사업목적 달성여부,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
- ※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
(집행잔액 확인,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위반여부 파악 등)
- 제출자료 :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, 회계검증보고서 등
 - 최종 평가결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

Ⅲ 행정사항

소요예산

- 예산액 : 금200,000천원(금이억원) /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
-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산출 근거	소요액
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	사무관리비 (201-01)	국제개발협력사업 공모 선정심사 회의수당 등	5,000
	민간경상 사업보조 (307-02)	국제개발협력 공모사업 지원 보조금	195,000
총 계			200,000

추진일정

- 사업공고 : '20. 5.22 ~ 6.4(14일간)
※ 제안서 접수 : '20. 6. 2 ~ 6.4 (3일간)
- 심사 및 선정 : '20. 6월
- 실행계획수립·약정체결·보조금교부 : '20. 6월
- 사업추진 : '20. 7월~12월
- 중간평가 / 최종평가 및 정산 : '20.11월 / '21.1월

붙임 1. 공고문(안) 1부.

2. 지원신청서류 및 요약서 서식 1부.

3. 사업비 산출 및 예산집행 기준 1부. 끝.